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화성·가연성 물질 제조·취급·저장 시설 등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
■ 이광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24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세 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인화성·가연성 물질 제조·취급·저장 시설 등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	3

I. 제안경위

1 . 제 안 자 : 이광희의원 등 10인

2 . 제 안 일 : 2026. 04. 30.

3 . 회 부 일 : 2026. 05. 0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현장에서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등을 중심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화재 초기 자동소화설비의 작동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규모 기준 등에 따라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거나 폭발성 분진 및 유증기가 발생하는 시설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산 및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큼.

이에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는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

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신설하여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따른 비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인화성·가연성 물질 제조·취급·저장 시설 등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법률에 규정

개정안은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시설 등 화재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날까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소화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2(자동소화장치의 설치)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계인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u> 1. <u>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시설</u> 2. <u>폭발성 분진 또는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시설</u> 3. <u>그 밖에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이나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u>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소화장치의

현행	개정안
	종류·설치·관리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동소화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0조의 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5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화재발생 가능성, 연소 확산 속도 및 인명피해 위험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날까지 제10조의 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활동의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 중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을 의미하는데¹⁾, 이 법 시행령 [별표 2]는 특정소방대상물을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기본법」

공동주택,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²⁾ 등 30종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용도 분류³⁾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이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건물 용도가 확정되면 이와 연동해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범위가 확정된다는 점에서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과 소방 행정 및 건축 행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는 [참고 1] 참조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2022.11.15.>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시설
24. 국방·군사시설
25. 방송통신시설
26. 발전시설
27. 묘지 관련 시설
28. 관광 휴게시설
2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집행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⁵⁾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제12조제1항), 현행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소방시설의 종류를⁶⁾⁷⁾, [별표 4]에서

4)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6) < 소방시설의 종류: 소화설비를 중심으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소방시설(제3조 관련)

1.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소화기구**

1) 소화기

2)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3)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 가스자동소화장치

5) 분말자동소화장치, 6)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

1) 스프링클러설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소화설비**

1) 물분무소화설비, 2) 미분무소화설비, 3) 포소화설비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5) 할론소화설비

6)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화설비

7) 분말소화설비, 8) 강화액소화설비, 9)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로 구분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중 해당 내용 발췌

7) - 소방시설의 종류별 기능 및 예시는 [참고 2] 참조

- 소화설비의 종류 및 특징은 [참고 3] 참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음⁸⁾.

예를 들면, 자동소화장치⁹⁾란 사람이 직접 조작하지 않더라도 화재를 감지하거나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인데,

이 법 시행령 [별표 1]은 자동소화장치의 종류로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등 6종을 규정하고 있고¹⁰⁾,

시행령 [별표 4] 및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¹¹⁾은

8) 예를 들면,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과 같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1. 2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1. 소화설비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9) 자동소화장치는 초기 대응이 빠르고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공간에도 작동이 가능하여 특정 위험공간에 맞춘 국소방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구획된 실이나 특정 장비 내부 등 한정된 범위(국소공간)만 방호할 수 있어 화재가 해당 범위를 벗어나면 소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10) 시행령 [별표 1]은 자동소화장치의 종류를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외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등 6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공장, 창고 등에는 자동소화장치 중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가 주로 적용된다고 소방청은 설명함(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가정용 열발생 조리장치”에서 발생하는 가스누출과 화재를 감지하여 열원을 차단하고 소화하는 장치이고,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보다 방호범위는 크지만 시험 대상은 음식점·급식소에 사용하는 튀김기, 부침기, 후드 및 덕트 등의 상업용 조리기구에 해당하므로, 인화성·가연성 물질 제조·취급·저장 시설 등 산업현장에서 주거용 자동소화장치 및 상업용 자동소화장치 사용은 적응성이 없음).

1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국립소방연구원공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 및 자동소

공장 바닥면적 100 m²마다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면서¹²⁾ 추가로 발전실·변전실·위험물 저장취급장소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부속용도 공간에도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동소화장치의 종류 및 주요기능>

자동소화장치	주요기능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형태의 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에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아파트등 및 오피스텔에는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음식점·급식소 등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

(자료: 소방청)

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함(「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1.1.1.).
12)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표 2.1.1.2.

<부속용도 별로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¹³⁾>

용도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보일러실·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 된 상자 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이 소화기로 할 것. 이 경우 나목의 주방에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로 설치해야 한다. 2. 자동확산소화기는 해당 용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10 ㎡ 이하는 1개, 10 ㎡ 초과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보일러, 조리기구, 변전설비 등 방호대상에 유효하게 분사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수량으로 설치할 것
2. <u>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u>. 다만, 제1호 다목의 장소를 제외한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u>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u>(다만,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 V 또는 직류 750 V 이상의 것에 한한다)
3. 「<u>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u>」 <u>별표 1</u>에 따른 지정수량의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u>장소</u>	능력단위 2단위 이상 또는 유효설치방호체적 이내의 <u>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u>

13)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 표 2.1.1.3. 중 발췌

개정안은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시설, 폭발성 분진 또는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이나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안 제10조의 2제1항 신설),

이 법에 따라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5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날까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며(안 부칙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소화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최근 대전 소재 공장화재¹⁴⁾¹⁵⁾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14) <대전 대덕구 소재 공장 화재 사고 개요>

- (일 시) '26. 3. 20.(금) 13:17(신고접수) → 19:12(초진) → 23:48(완진)
 - (대 상) 안전공업(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 대전 대덕구 문평동 43-4)
※ 철골조 3층(연면적 9,468.86㎡) / 대전119특수대응단(1.2Km), 대덕소방서(10.1km)
 - (원 인) 조사 중 ※ 본관동 공장에서 원인 미상 화재 발생 추정
 - (인명/재산) 총 74명(중상 25명, 경상 35명, 사망 14명) / 조사 중
진급 7, 응급 18, 비응급 21, 귀가 14
- (자료: 소방청)

- 사고 원인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자동차 엔진 밸브를 제조하는 공정 특성상 금속 가공 시 절삭유와 세척유를 다량 사용하는데, 이때 발생한 유증기와 기름 찌꺼기가 공장 내 집진 설비 및 덕트(배관) 내부에 오염 물질로 가득 쌓여 있었던 것이 화재를 키우는 도화선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함(출처: 한겨레신문, 대전 안전공업 ‘2년에 1번꼴’ 화재... 전직 지원 “세척유 관리 허술”, 2025. 3. 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50845.html).

한편, “해당 공장은 2층을 불법으로 증축해 2.5층 복층 휴게실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공간에는 창문과 대피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지며, 이곳에서만 9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도 있음(출처: 조선일보,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경찰, 업체 대표·안전책임자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입건, 2026. 4. 7.,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6/04/07/3JNY7IGKIJJD6HI7OZ6ERNHF6YE/>).

15) <대전 유성구 소재 공장 화재 사고 개요>

2020년 이후 공장 화재는 총 13,221건 발생하여 73명이 사망하고 1,023명이 부상하였으며 약 2조 10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2020년 이후 공장 화재 발생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연도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사망	부상	
계	13,221	73	1,023	2,010,211
2020	2,306	12	172	201,177
2021	2,323	9	160	240,992
2022	2,334	7	180	406,917
2023	2,166	7	141	429,844
2024	2,046	29	198	339,670
2025	2,046	9	172	391,611

(자료: 소방청)

이에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시설, 폭발성 분진·유증기를 발생시키는 시설 등 화재 위험이 높은 모든 시설(이 법 시행 전에 소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시설 포함)에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

- 일시 : 2026.6.1.(월) 10:59(접수) ~ 13:07(완전) / 장소 : 대전 유성구 외삼로 8번길 99
 ※ 동원인력 : 350명(소방 127, 경찰 165, 유성구청 10, 기타 48) / 동원장비 : 91대
 - 사고원인 : 조사 중
 - 피해현황 : 인명피해(사망 5, 부상 2), 재산피해(조사중)
 (자료: 소방청)
- 사고 원인에 대하여 언론은, 최근 발생한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 사고는 로켓 추진제 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잔류 화약 성분의 마찰과 방위사업청 규정을 위반한 무허가 시설 운영 등이 맞물리며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도함
 (출처: 한국일보, “경찰, 한화에어로 폭발 원인과 시작점 윤곽 잡았다...배관에 쌓인 ‘마른 화약 슬러지’ 주목”, 2026.6.30.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62813210004458>;
 중앙일보, “7명 사상 한화에어로 대전공장 ‘56동 건물’ 무허가로 드러나”, 2026.6.24.,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9410>)

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시설’, 폭발성 분진 또는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시설’, 화재 발생시 급격한 확산이나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은 규정 방식은 자동소화장치 설치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보임.

현행 체계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규모가 확정되면 이와 연동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 시행령 [별표 4]에 의해 확정됨. 이는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건축·소방 행정 집행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그러나 개정안은 건축물 완공 이후 내부에서 ‘어떠한 물질(인화성·가연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가’라는 가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설치 의무를 부과하여,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도 내부 업종 변경이나 취급 물질의 종류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수시로 발생·소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¹⁶⁾.

둘째,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자동소화장치와 그 밖의 소방시설에 대한 규정 형식이 이원화 되는 바, 법령 규정의 체계적 정합성 측면 및 소방 행정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현행 법령 체계를 살펴보면 ① ‘법률’에서 소방시설과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를 두고(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② ‘시행령’에서 소방시설의 종류([별표 1]),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별표 4])를 구체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소방 환경의 변화에 맞춰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관련 설치 기준 등의 변경 요소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개정안은 소방시설의 종류 중 하나인 소화설비에 속하는 ‘자동소화장치’와 자동소화장치의 설치 대상 시설(인화성·가연성 물질 취급 시설 등)만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안 제10조의2).

이 경우, 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만 설치 대상 시설과 소방시설의 종류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그 밖의 소방시설은 현행과 같이

16) 또한, 소방청은 하나의 공장 건축물 내에 인화성 물질 취급 구역과 비취급 구역이 공존할 경우 ‘시설’의 범위가 건축물 전체인지 해당 구역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도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시행령에 위임하여 설치 대상과 종류를 정하게 되는 이원적 체계가 형성됨.

개정안의 내용은 소방·건축 행정의 집행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현행 위임 체계와 상이한 구조를 취하게 되는 바, 현행 법령의 체계를 넘어서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현행과 개정안의 규정 형식 비교>

설치장소 규정방식	소방시설명		
	소화설비(총 6종)		기타 소방시설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자동소화장치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현 행	시행령 [별표 4]	시행령 [별표 4]	시행령 [별표 4]
개정안	법 률	시행령 [별표 4]	시행령 [별표 4]

셋째,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소화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 법 제3조제3항17)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소방 기술·기준의 개발 및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대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넷째, 개정안은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시설, 폭발성 분진 또는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시설 등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중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 후 5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날까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소요 예산, 이 법 본칙 규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초기 화재의 효과적인 진압을 목적으로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시설(총 20,307개소)에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약 1.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소방청은 추정하고 있음¹⁸⁾.

<자동소화장치 설치비용 산출 내역>

- 총 설치 비용: 약 18,134억원(470만원 × 19개 × 20,307개소, 부가세 별도)
- 개소당 설치 비용 : 8,930만원(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19개 × 470만원)

[산정 기준]

18) 참고로, 소방청은 기존 대상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간단하며, 자동소화장치는 이미 KFI 형식승인을 득한 제품이 있다고 설명함.

- 적용 대상 : 인화성·가연성 물질 제조·취급·저장 시설(20,307개소)
- 대표 면적 : 400㎡(400㎡ 이하 시설의 상한값 적용)
- 방호 높이 : 3.7m(NFSC 101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분사헤드 최대 설치 높이)
- 개소당 방호체적 : $400\text{m}^2 \times 3.7\text{m} = 1,480\text{m}^3$
- 개소당 필요 장치 수 : $1,480\text{m}^3 \div 80\text{m}^3/\text{개} = 18.5 \rightarrow$ 올림 적용 19개
- 장치 1개당 비용 : 470만원

<인화성·가연성 물질 제조·취급·저장 시설¹⁹⁾ 현황>

구분	계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가연성물질 취급대상	699	167	133	399
인화성물질 취급대상	19,608	2,557	9,379	7,672
계	20,307	2,724	9,512	8,071

(출처 : 2025년 소방청 위험물 통계자료)

<1개 특정소방대상물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1개 설치 비용 세부산출 근거>

구분 항목	세부 산출 근거	금액 (추정치)	비고
총비용		470만원	부가세 별도
제품비용	캐비닛(50kg/68L) 1SET	320만원	1 SET
공사 및 자재비용	인건비+설치비+화재감지기등 자재비	150만원	

(자료: 소방청)

19) 인화성·가연성 물질이 제조·취급·저장시설 통계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통계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

다음으로, 현행법은 소방시설의 종류나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조문을 두고 있는데(제13조제1항 본문)²⁰⁾²¹⁾,

이는 건축 당시 적법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

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2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가. 소화기구
- 나. 비상경보설비
-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 마.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 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 다. 노유자(老幼者) 시설
- 라. 의료시설

※ 동 특례조항은 이 법 제정(2003.5.29. 제정, 2004.5.30. 시행) 당시부터 존재하였음.

21) 다만,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비상경보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제13조제1항 단서), 소화기구, 비상경보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는 소방시설 중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이고 소급하여 적용하더라도 건축물 구조, 인테리어 등을 크게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공동구,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노유자(老幼者) 시설, 의료시설을 명시하고 있는데(제13조제1항제2호),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들은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고, 공공성 측면 또는 화재취약자 보호 측면에서 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었다는 특징이 있음.

관리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그 적법성을 인정하여 신뢰보호와 법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 부칙을 입법하는 경우, 현행법 제13조제1항과의 관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현재 소방청과 관계 부처는 공장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 연면적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정비, ② 위험물 전문 점검업 도입, ③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위한 상설 조직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 외에, ④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러한 정부 정책 추진을 통해서도 개정안의 취지인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등의 화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공장 화재안전 관련 정부 정책 추진 현황(2026년 7월 31일 발표)>

(추진배경) 대전 안전공업('26.3, 14명), 화성 아리셀('24.6, 23명) 등 대형 공장화재로 다수 인명피해 발생

(구체적인 대책: 소방청 대책을 중심으로)

1) 지능형 화재 감지기 설치 의무화

→ 화재 조기감지와 비화재보 저감이 가능한 지능형 화재감지 적용을 의무화하여 화재경보의 신뢰성 제고

※ (현행) 일반 ^{단순 ON-OFF} 감지기 → (개선) 지능형(^{실시간 온도, 연기 분석}아날로그)감지기 설치

2) 연면적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 마련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대상을 층수 기준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공장으로 확대,

단층·저층 구조의 공장도 포함되도록 설치 기준 강화(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 (현행) 단층 시설은 제외 → (강화) 연면적 5,000m² ↑ 시설 추가(단층·저층 공장 포함)

< 현행 공장 SP 설치기준 > △ 층수가 6층 이상인 경우 모든 층, △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m² 이상인 해당 층

3) 스프링클러 미설치 공장·창고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지원

→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지원²²⁾

자동확산소화기 보급 소요예산(안)

▶ (총사업비) 891억원(매년 59억원), (사업기간) 2027~2031년(5년)

- 지원대상 19,806개소 × 자동확산소화기 90개* × 설치단가 50,000원**

* 최근 3년 연면적 1,000~5,000m²에서 가장 많은 화재 발생에 따라 기준 면적 1,000m²로 설정 → '자동확산소화기 실효성 검증 시험 결과' 방호면적(11m²/개) 적용하여 1,000m²÷11m² = 90개

** 자동확산소화기 본체 25,000원 + 인건비, 기타경비 등 간접비용 25,000원

▶ (분담비율) 과거 유사사례 적용하여 '국1:지방1:민간1' 분담율, 각 297억원

※ (유사사례) 숙박형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3년간 국비 84.2억/총예산 252.6억)

↳ (기간) '19. 8. ~ '22. 6. (2년 11개월) / (분담) 국비 1(소방청) : 지방비 1(소방본부) : 민간 1(영업주)

4) 공장·창고시설 선제적 화재 안전관리 강화

→ 동일 건축물에서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거나 오작동 출동이 있는 대상을 '화재 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

→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장·창고 밀집 지역 및 산업단지를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강화

5) 위험물 전문 점검업 도입

→ 위험물시설 점검에 요구되는 기술역량·장비 등 분석, 그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점검업자가 점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²³⁾

6) 위험물안전관리 체계 확립

→ 年 단위 단기적 위험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에서 5개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필요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법률 조항 신설

7) 민간 소방훈련 실효적 작동을 위한 관리 강화

→ 훈련 실시 과정에 대한 영상 기록 보관을 의무화 하여 자체훈련 실효성 및 현장 대응 수준 확인 강화

8)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부실점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체점검 계약서 첨부을 의무화하여 정상적인 시장 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된 대상은 소방관서에서 부실 점검 여부 확인

(자료: 소방청)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자동소화장치만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현행 법령의 규정 형식 및 체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소방시설법은 건축물 용도·규모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위한 법으로 인화성·가연성 물질 등을 제조·저장·취급하는 내부 시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국부적인 장소에 설치하는 자동소화장치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전체에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와 지능형감지기 설치를 위해 이 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

22) 소방청은 20년 이상 노후 공장, 영세 제조업체, 산업단지 밀집지역, 반복 화재 발생 대상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함.

23) 위험물 전문 점검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

- 의안번호 제2205900, 정부제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11. 26. 제출)

- 의안번호 제213096,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 9. 18. 제안)

참고 1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자료: 소방청)

○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30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① 공동주택 ② 근린생활시설 ③ 문화 및 집회시설
- ④ 종교시설 ⑤ 판매시설 ⑥ 운수시설 ⑦ 의료시설
- ⑧ 교육연구시설 ⑨ 노유자시설 ⑩ 수련시설 ⑪ 운동시설
- ⑫ 업무시설 ⑬ 숙박시설 ⑭ 위락시설
- ⑮ 공장 - 물품의 제조 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 ⑯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⑰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⑱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⑲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⑳ 자원순환 관련 시설
- ㉑ 교정 및 군사시설 ㉒ 방송통신시설 ㉓ 발전시설
- ㉔ 묘지 관련 시설 ㉕ 관광휴게시설
- ㉖ 장례시설(「의료법」 제36조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시설은 제외)
- ㉗ 지하가(지하상가/터널)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 ㉘ 지하구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
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
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50m 이상인 것
- ㉙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 ㉚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 의무화 용도 및 주택부대시설 제외)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
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참고 2

소방시설의 종류 별 기능 및 예시

(자료: 소방청)

□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중 관련 내용 발췌

소방시설의 종류	주요 기능	종류(예시)	비고
소화설비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소화기, <u>자동소화장치</u> 옥내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설비등, 물분무등소화 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설비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시각경보기, 화재 알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 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소화용수설비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 수조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참고 3 소화설비의 종류 및 특징

(자료: 소방청)

□ 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중 관련 내용 발췌

소화설비의 종류		특징	비고
소화기구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기구	
	간이소화용구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화재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 확산시켜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기구	
<u>자동소화장치</u>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 이내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소화하는 자동식 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건축물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물을 끌 수 있도록 밸브를 열면 물이 나와 화재를 진압하는 수동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펌프가 작동하여 물탱크의 물을 배관으로 보내어 천장, 벽 등에 설치된 헤드로 물을 뿌려 불을 끄는 자동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유류화재, 전기화재 또는 수손피해가 우려되는 고가 장비에 설치하는 자동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건축물 밖에 설치하는 소화전으로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건물밖에서 소화전호스를 연결하여 건물의 불을 끄는 기능 또는 인접 건축물에 대한 연소확대 방지 용도로 사용	

참고 4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변경 연혁

(자료: 소방청)

시행일자	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비 고
2012.6.11.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별표4) ▶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내부에 가스식·분말식·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설치 ▶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의 바닥면적 50㎡ 이내마다 가스식·분말식·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설치 ▶ 지정수량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가스식·분말식·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설치	
2017.6.12.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별표4) ▶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내부에 가스·분말·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설치 ▶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의 바닥면적 50㎡ 이내마다 가스·분말·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설치 ▶ 지정수량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가스식·분말식·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설치	
2022.9.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별표4) ▶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의 바닥면적 50㎡ 이내마다 가스·분말·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설치 ▶ 지정수량 1/5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가스식·분말식·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설치	현행규정